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22 선고 2021가단2035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큰솔

담당변호사 박요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3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2. 4. 접수 제78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6. 3. 18.경부터 2019. 4. 15.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1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계불입금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26.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0. 23. C은 원고에게 1억 4,900만 원과 그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1,900만 원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 12. 31.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3. 선고 2020가단21924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97705 판결).

다. 원고는 C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약속하였던 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20. 2.경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법원은 2021. 4. 22.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C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여금과 계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4. 3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2716 판결).

라. C은 2021. 3. 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37,7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는 2021. 3. 26. 공탁금 137,706,712원을 수령하였다.

마. C은 2020. 2. 4.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 3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C은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C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과 계금 채무가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0. 23. C은 원고에게 1억 4,900만 원과 그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1,900만 원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 12. 31. 확정된 사실, C이 2021. 3. 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37,7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21. 3. 26. 공탁금 137,706,712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공탁금 137,706,712원은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730,082원(= 1억 3,000만 원에 대한 2020. 8. 13.부터 2021. 3. 26.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318,356원 + 1,900만 원에 대한 2020. 8. 13.부터 2021. 3. 26.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11,726원)에 충당되고 남은 116,976,630원(= 137,706,712원 - 20,730,082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32,023,370원(= 149,000,000원 - 116,976,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다. C의 사해행위, 무자력,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대여금과 계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C이 D과 실질적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 피고가 채무자 C의 아들인 점, C과 D 사이의 실질적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라면 피고가 아닌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점,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남편 D이나 아들 피고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범위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범위는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수령한 공탁금을 공제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C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불가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과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육진

별지